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지원 계획 수립 등〉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208호)

2024. 1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제안이유	1
2. 주요내용	2
III. 검토의견	4
1. 수용자자녀 정의 및 수용자자녀 지원 및 인권보호 방안을 기본 계획에 포함	4
2. 협의체 참여 관계기관의 구체화	7
3. 수용자와 수용자자녀간 접견을 접촉차단시설 미설치장소에서 시행	9
4. 임산부 수용자의 출생신고 지원 및 유아 양육기간 연장	12
5. 소장의 수용자자녀의 양육환경 조사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통보의무	16
6. 수용자의 자녀 주거지를 고려한 이감 등	19

I. 제안경위

1. 발의자 : 한정애의원 등 11인
2. 발의일 : 2024. 8. 26.
3. 회부일 : 2024. 8.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아동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흡함. 수용자자녀의 경우 대표적인 취약아동으로 가족 해체와 심각한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음.

부모가 수용될 경우 남겨진 아동들이 현행 아동보호체계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도 심각함. 2021년 법무부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T/F가 추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20.8%였으며, 이 중 80명은 보호자 없이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됨. 보건복지부 또한 2020년 보호대상아동 현황부터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으로 ‘부모교정시설입소’ 항목을 추가하였는데 2020년 166명, 2021년 99명, 2022년 110명 등 수용자자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수용자의 자녀들(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이라는 주제로 일반토론의 날을 개최해, 형의 집행단계

를 포함한 형사사법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수용자자녀의 존재와 권리를 고려할 것을 국제사회에 권고하였고, 2019년 10월 제5·6차 심의에 따른 최종 견해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수용자자녀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음.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3월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자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형사사법 단계에서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음.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020년 9월 부모의 체포부터 출소까지 모든 과정에서 미성년자녀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실현하도록 정책 개선을 권고하였음.

최근에는 아동의 당연한 권리와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정책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수용자자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용자자녀에 대한 출생과 양육 지원을 명시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 및 인권보호방안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2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3).

나. 수용자가 수용자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

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41조).

다. 임신부인 수용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호자인 수용자는 아동이 36개월이 될 때까지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 및 제53조).

라. 수용자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안 제53조의2).

마. 수용자자녀를 위한 이감지원 규정을 마련함(안 제53조의3 신설).

바. 수용자자녀 지원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함(안 제53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1. 수용자자녀 정의 및 수용자자녀 지원 및 인권보호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수용자자녀’를 정의하고, 기본계획에 수용자자녀 지원 및 인권보호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안 제5조의2).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수용자자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서 그 부 또는 모, 양육하는 친족이 수용자인 아동을 말한다.
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9. (생략) <u><신설></u> 10. (생략) ③ ~ ⑤ (생략)	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9. (현행과 같음) <u>9의2. 수용자자녀 지원 및 인권보호 방안</u> 10.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나.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현황¹⁾

- 법무부가 2024년 5월 전국 교정기관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수용자 미성년 자녀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수용자(48,365명, 응답률 82.0%) 중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17.1%인 8,267명이고, 미성년 자녀는 12,791명으로 조사되었음.

[표 1] 수용자 미성년 자녀 연령별 현황(2024년 조사 기준)

(단위 : 명)

연령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인원	134	383	398	489	484	585	620	767	747	791
연령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합계
인원	879	796	909	860	806	766	855	809	713	12,791

* 자료: 법무부

- 자녀가 있는 수용자(8,267명)를 대상으로 조사 시점 기준 자녀의 주 양육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90% 가량은 배우자와 자녀의 조부모 등이 양육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위탁시설(192명), 지인(50명) 등이 양육하거나 자녀 혼자 생활(51명)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일부 수용자가 자녀는 어떻게 양육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55명)도 있었음.

1) 개정안에 따른 수용자자녀 중 수용자가 친족인 아동은 조사대상이 아님

[표 2] 수용자 미성년 자녀의 주 양육자 현황(2024년 조사 기준)

(단위 : 명, 수용자 기준/비율)

양육자	자녀의 부 또는 모	자녀의 조부모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성년인 수용자의 자녀	위탁시설
인 원	6,807 (82.3%)	824 (10.1)	169 (2.0%)	86 (1.0%)	192 (2.3%)
양육자	지 인	혼자 생활	모 름	기 타	합 계
인 원	50 (0.6%)	51 (0.6%)	55 (0.7%)	33 (0.4%)	8,267

* 자료: 법무부

다. 검토의견

- 법무부의 2024년 전수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규모가 적지 않고, 이들 중에는 안정적인 양육 환경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비추어, 미성년 자녀가 수용자의 형 집행기간 중 안전하게 보호·양육받을 필요성이 있고, 수용자 교화 및 원만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재범을 예방하고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가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용자 가족과 자녀에 대한 지원 등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 이에 수용자자녀 지원 등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것은 별도의 개별 법률이 부재한 상황에서 수용자 자녀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등의 지원 사업과 인권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을 위한 최상의 이익’²⁾을 고려하는 조치로 볼 수 있음.

2) 국회입법조사처, 「수용자 가족·자녀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과제」, 2020.5

2. 협의체 참여 관계기관의 구체화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수용자 처우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협의체에 수용자 자녀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수용자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지원 부처를 구체화하고 있음(안 제5조의3).

현행	개정안
제5조의3(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u>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u> 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u>법원, 검찰 및 경찰</u> 등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조의3(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① ----- <u>형의 집행, 수용자 및 수용자자녀의 처우</u> ----- <u>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법원</u> ----- -----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수용자 자녀의 지원이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역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부처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수용자 자녀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내용에 수용자자녀의 처우를 위한 사항까지 포함하여 관계부처 간 협력에 있어서 수용자자녀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을 강

조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 첫째, 현행법 체계상 수용자 자녀에 대한 사항은 제2편 ‘수용자의 처우’ 내 제7장(특별한 보호)의 제53조의2(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개정안 제5조의3이 규정한 ‘수용자 자녀의 처우’에 관한 사항도 ‘수용자 처우’라는 포괄적 교정 정책에 포함된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둘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수용자 가족 및 자녀 지원 관련 부처를 구체화하고 있으나, 관계 기관간 실질적인 협의와 이행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법무부는 수용자 가족지원을 위해 지난 2011년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등을 체결³⁾하고, 부처별로 수용자 자녀 지원책을 마련하여 관련 정책들을 시행하였으나, ‘부처별 협약사항이 권고사항이라는 한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부처별 이행이 미진’한 점에 대한 지적⁴⁾이 있었음.

이는 관계부처 간 협력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책 및 재정지원, 업무 책임이 소관 부처 별로 분산 진행

3) 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교육과학부·서울대학교,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2011년 10월 27일

4) 신연희 외,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7,

되어 비효율적⁵⁾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안 제5조의3과 같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협의체 참여부처에 대한 명문화와 더불어, 정책을 실제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규범 대상은 수용자이고, 현행 제5조의3은 교정행정 관련 주요 사항을 열거하면서 협의체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적시한 것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수용자자녀의 처우’라는 세부적인 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입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아 보이며, ‘관계 기관’에 포함될 수 있는 모든 관계 부처를 법률에 열거하기 보다는 대통령령에 규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 수용자와 수용자자녀간 접견을 접촉차단시설 미설치장소에서 시행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수용자와 수용자자녀간 접견은 반드시 접촉차단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제41조제2항).

5) 허민숙, 『수용자 가족·자녀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 입법조사처, 2020

현행	개정안
제41조(접견) ① (생략)	제41조(접견)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 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	②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u><신설></u>	3. <u>수용자가 수용자자녀와 접견하는 경우</u>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③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 ----- -----.
1. <u>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u>	<u><삭제></u>
2.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u><삭제></u>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수용자와 수용자자녀간 접견은 반드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자녀와의 유대감을 증진하고 수용자에게는 건강한 수용생활과 재범방지를 위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하려는 취지임.

○ 현행법 제41조제3항은 수용자와 미성년 자녀간 접견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인 바, 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장소변경접견⁶⁾ 또는 가족접견실⁷⁾을 통해 사실상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접견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수용자와 수용자자녀간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전혀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바, 가족

6) 장소변경접견의 목적은 “일반접견으로 해결하기 힘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접견실에서 접견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용자의 안정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사회복귀를 촉진시키는 데에 있음(교정본부 홈페이지)

7)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24조(가족접견실) ① “가족접견실”이란 수형자의 가족관계회복을 위해 교정시설 구내에 일반 가정집 거실형태의 시설물을 갖춘 공간을 말한다.

② 소장은 전항의 가족접견실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 가족접견실이 설치되기 전까지 상담실, 장소변경접견실 등 기존의 시설 중 한 곳을 전항의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의2(가족접견의 종류 요건) ① 일반 가족접견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장은 수용자의 입소 전 경력과 직업, 가족의 구성 및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혜나 차별 시비가 없도록 대상자 선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형기의 3분의 1 이내 수형생활 초기 수형자로서 가족관계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4조부터 제213조까지 규정된 엄중관리 대상자는 제외)

2. 기타 형집행률에 관계없이 수용생활안정 및 가족관계 회복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형자와 사형, 무기, 장기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미결수용자

② 위기 수용자 및 가족 긴급지원서비스 접견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혼 위기, 양육 곤란, 경제적 곤궁 등으로 가족위기 관리가 필요한 수용자

2. 기타 가족 관계 해체의 징후가 현저한 수용자

관계 회복 기회 부여 등의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 법무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 수용자자녀 접견시 접촉차단시설 미설치 장소에서의 접견을 강행 규정화 할 경우, 아동·가정폭력 관련 범죄, 친족관계 성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수용자는 자녀와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인 경우가 있어 접견 시 폭행 등 교정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 다른 수용자는 시설 부족으로 접촉차단시설 미설치 장소에서의 접견 기회가 현저히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4. 임신부 수용자의 출생신고 지원 및 유아 양육기간 연장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여성수용자가 수용기간 중 출산한 자녀에 대해 출생신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수용자의 교정시설 내 유아양육기간을 생후 36개월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3항 및 안 제53조 제1항).

현행	개정안
제52조(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①·② (생략) <u><신설></u>	제52조(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소장은 수용자가 수용기간 중 출산한 수용자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지원하여야 한다.</u>
제53조(유아의 양육) ①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u>출산한</u>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생후 <u>18개월</u> 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53조(유아의 양육) ① ----- ----- <u>보호자인</u> ----- ----- ----- ----- ----- <u>36개월</u>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 개정안은 여성수용자가 수용기간 중 출산을 한 경우 소장이 출생신고를 지원하도록 하고, 여성수용자가 유아를 양육할 수 있는 기간을 생후 36개월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여성수용자의 모성보호 및 유아 양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임.
- ☐ 다만, 수용자 자녀의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⁸⁾는 병원, 교도소, 그 밖의 시설에서 출생이 있었을 경우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또한, 「형사소송법」 제471조⁹⁾ 등에 따라 구속집행정지 및 형집행정지로 출소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수용자 자녀의 출생신고에 대해 중복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해 보임.

□ 그리고, 유아 양육기간과 관련하여

- 현행 유아 양육은 여성수용자가 유아의 양육을 신청한 경우 소장은 ① 유아가 질병, 부상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수용자가 질병, 부상 그 밖의 사유로 유아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③ 교정시설에 전염병이 유행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유아양육이 특히 부적당한 때가 아니면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여성수용자가 양육할

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공공시설에서의 출생) 병원, 교도소, 그 밖의 시설에서 출생이 있었을 경우에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9) 「형사소송법」

제471조(동전)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 70세 이상인 때
3. 잉태후 6월 이상인 때

4. 출산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② 검사가 전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음.¹⁰⁾

- 여성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여성수용자가 유아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생후 일정 기간 모자(母子)가 서로 직접 접촉하는 것이 유아의 정서안정 등 건전한 양육을 위해 바람직하며, 출산 후 심신이 불안정할 수 있는 여성수용자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 제53조제1항에 따라 모의 유아 양육 허가기간을 18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도록 할 경우, 유아의 지적능력 발달과 정상 18개월 이후 시설 내 생활은 오히려 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¹¹⁾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 법무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 출생신고 지원과 관련하여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형사소송법」 등이 있으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적고, 개정안 중 ‘보호자’라는 개념은 「아동복지법」¹²⁾상 ‘친권자, 후견인,

10) 제53조(유아의 양육) ①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1. 유아가 질병·부상,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수용자가 질병·부상, 그 밖의 사유로 유아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교정시설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유아양육이 특히 부적당한 때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필요한 설비와 물품의 제공, 그 밖에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권수진 외,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원, 2019
일반적으로 신생아기(0-1세) 시기는 감각과 운동 능력을 발전시키며, 기본적인 애착 형성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이고, 유아기(1-3세) 시기는 언어 발달과 자아 인식이 시작되어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기술을 익히는 시기이며, 유치원기(3-6세) 시기는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규칙과 역할을 이해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시기임.

12)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가 포함되는 등 교정시설에서 유아를 양육하는 제도 취지상 유아 양육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5. 소장의 수용자자녀의 양육환경 조사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통보 의무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소장이 신입자의 자녀 양육환경을 조사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고, 신입자에게 수용자자녀가 갖는 권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현 행	개 정 안
제53조의2(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 ① 소장은 신입자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가 「아동복	제53조의2(수용자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수용자자녀의 존재와 이익을 고려하여 처우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자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의뢰 지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녀의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수용자자녀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소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 신입자에게 이 법과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수용자자녀의 권리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신입자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하며, 수용자가 보호조치를 의뢰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양육환경 조사 및 제4항에 따른 보호조치 안내와 보호조치 의뢰 지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수용자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교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간 연계를 확립하고, 수용자 자녀와 관련된 가정 지원제도 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수용자 자녀에 대한 관리 및 서비스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 이는 수용자 자녀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이 범죄자 처벌로 파생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사회적 책임임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범죄예방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함.

□ 개정안에 대하여 법무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수용자자녀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고지하는 것은 수용자가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보호조치 의뢰 지원의 방법·절차 등은 복지제도의 확충에 따라 신속·유연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법무부장관이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6. 수용자의 자녀 주거지를 고려한 이감 등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수용자자녀의 주거지를 고려하여 수용자를 근거리에 배정하고, 소장은 출소 예정인 수용자와 자녀와의 관계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3).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3조의3(수용자자녀를 위한 이감 등) ① 법무부장관은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할 경우 수용자자녀 주거지를 고려하여 근거리 시설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거나 이감을 지휘할 수 있고 소장은 위 이감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u> <u>② 소장은 출소 후 자녀를 양육할 수용자에게 수용자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u> <u>③ 법무부장관은 수용자자녀가 수용자를 접견하는 데 드는 비용등을 지원할 수 있다.</u>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원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u>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수용자자녀 등이 수용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에 용이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수용자를 수용자자녀와 가까운 교정시설에 배정하고, 출소 후 수용자가 자녀와 원만하게 관계회복을 할 수 있도록 소장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 출소 예정인 수용자에게 자녀와의 관계 회복 등을 위해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수용자자녀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자녀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자녀 지원의 일환으로서의 의미를 가짐.

□ 개정안에 대하여 법무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 수용자자녀와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수용자를 이송하는 경우 개정안에 죄명, 형기, 범죄 개요, 가족 관계, 양육 여부 등의 고려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고, 현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접견 동행서비스 등 접견 지원 제도¹³⁾를 실시 중이라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접견 지원 제도]

○ 목적: 경제적 빈곤이나 건강문제 등으로 수형자 접견에 어려움을 겪는 수형자 가족을 지원하여 면접권 향상 도모

○ 내용

- 일반 접견지원: 수형자 접견을 위해 가구당 일정 비용 지급(회당 10~20만원, 최대 4회)
- 동행 접견지원: 건강문제 등으로 필요할 경우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수형자 가족과 접견 장소까지 동행

문 의 처
02)6788-5057